www.koreanba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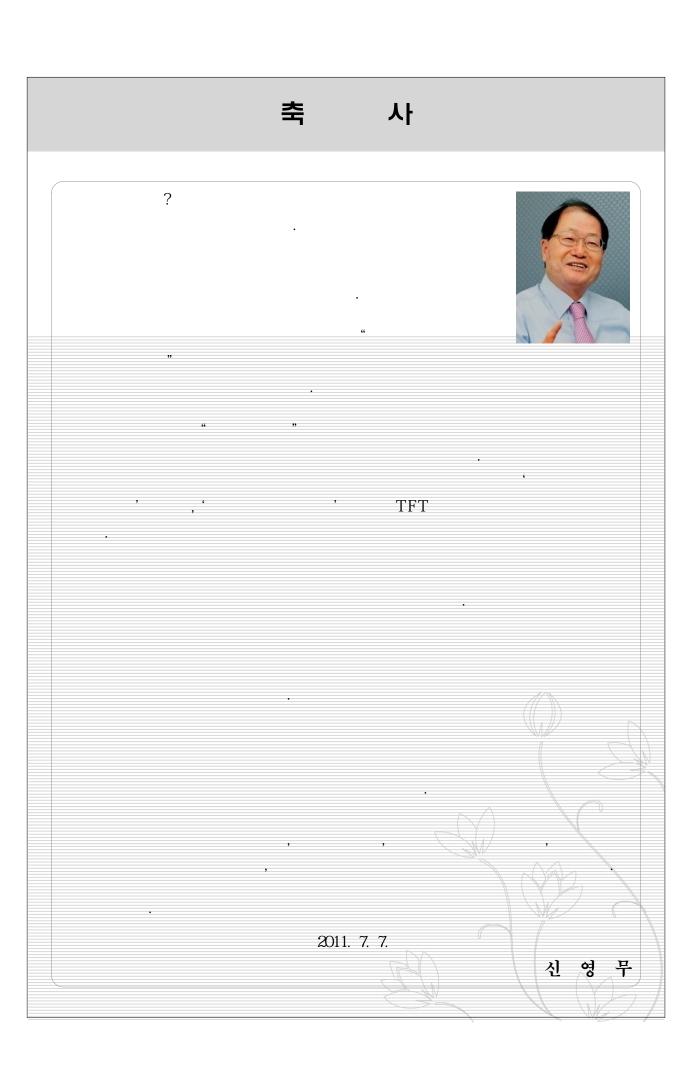
국제결혼관련

진 행 순 서

• 방청	자 등록		13:30 - 14:00			
• 개	회		14:00 - 1	4:10 (10)		
0						
0						
0						
● 주제	1. 결혼	중개업법에 대현	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시	 }례 검토		
	14:10	- 14:30 (20)				
	14:30	- 14:40 (10)				
● 주제	●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14:40	- 15:00 (20)				
	15:00	- 15:10 (10)	簡)		
	15:10	- 15:20 (10)				
● 주제	3. 다문	화가정 자녀(미	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	[함)에 대한 지원정책		
	15:20	- 15:40 (20)				
	15:40	- 15:50 (10)		/		
● 주제	4. 이주	여성관련 가사	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			
	15:50	- 16:10 (20)				
	16:10	- 16:20 (10)				
● 종합	 토론		16:20 - 1	6:50 (30)		

목 차

❖ 축	
* -	~I
❖ 인 ⋏	├ 말
	9
▲ ᄌ ᆌ ᅦ	경증조계어버에 대한 거든 미 노이어 시제나게 거든
▼무제□	.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13
	29
● 주제 2	r.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前)
	(193)
● 주제 3	. 다문화가정 자녀(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63
	/
● 주제 4	.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91
	107





?



2011.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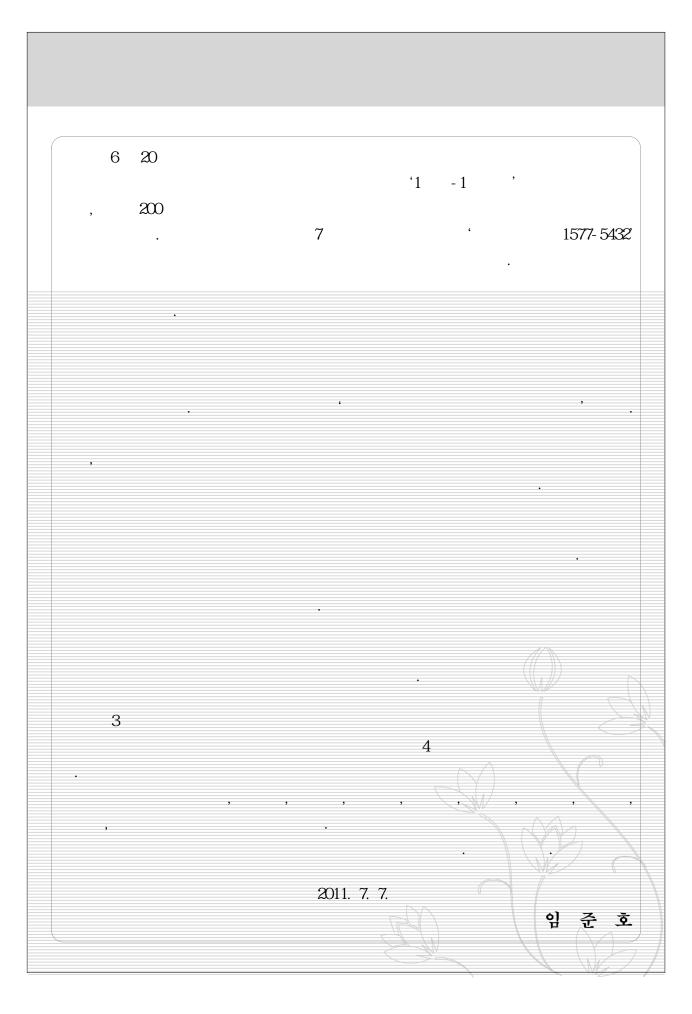
김 용 헌

인 사 말 3~ 4 11

, 7, 8

100

8



발표자-토론자 소개

주제 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 김재련 (42 , 32)

_

Email: jerry1120@hanmail.net

- 한국염

0

Email: kukyom@hanmail.net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 **김종철** (44 , 36)

> APIL

0

Email: apilkorea@gmail.com

- 차규근 (34 , 24)

O

0

Email: arusha01@hanmail.net

주제 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 김민아

0

Email: kma87@korea.kr

- 정기선

0

Email: ks.chung@iom-mrtc.org

주제 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 **이현곤** (39 , 29)

0

Email: hyungon@scourt.go.kr

- **윤종섭** (36 , 26)

0

Email: jsyoon@scourt.go.kr

주제 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김 재 련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보완필요성에 대하여

발표자: 변호사 김재련

1. 서론

2008

)

383%

가. 국제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통계

		2005		136%		, 2010
10.5%		, 2010 1			18	2,000
	0.36%	,				
	89.7% ,		162,00	0		
	2010		116,858	9.6%		11,245
		,				
+			TIO4 0474+1			
나. 술신	국가 미철 및	! 국내 문포	지역, 연령차	ol		
2010					()
36.3%,	363%,	7.3%				
			,			

2,472

1).

¹⁾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3.15.자),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 중 첨부자료 1 '농 림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 참조.

24 21.1% , 25 29 20.2% 20 41.3% 333, 43.2 10 .2)

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1)

20-44 87.39% 97.4%, 90%, 86.8%, 86.5%, 75.4%, 44.5%

(2)

20 3-4

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2010.9. p59 참조)'

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현황, 피해실태 및 보완필요성에 관하여

가. 국제결혼 중개업 현황3)

2009.12 1,237 (871), (2009.8) 266 91% 9% 215 44% 6 36%

1

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실태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2009.8

1,326

, (1,266), (1,130), (1,120), (1,091)

³⁾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3.15.자),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 중 첨부자료 2 참조.

다.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와 관련한 입법례4)

(1)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2005: IMBRA)

(,)

, 18

(2)

4) 여성가족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연구보고 2010-49 제3장 외국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 참조, 연구책임자 김두년, 공동연구자 신용묵, 이정환, 연구보조원 최현태)

(3)

2007

(58 1),

(2008.7.24)

(4)

1994

(5)

68

(6)

(7)

(200811.3)

80%

5),

라. 결혼중개업법의 주요내용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필요성

(1)

(8)

(9)10) (11)

(12)

(13) ⑦

(25)

(2)

⁵⁾ 김정성/김재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문제는 다시 국제결혼중개업이다] 토 론회 자료집, 이주여성인권포럼, 2010.2.17. p. 24. 각주 26.

마.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보완 내지 개정 필요성

(26 2) (1)

2 1

2 1

1 1,000 1,000

(2) , (25

[사 례]

캄보디아 19세 여성이 43세의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 및 국내입국을 했는데 한국인 남성은 지적장애가 심각한 상태였고, 그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남성의 지적 장애가 명백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적 없고, 캄보디아 여성 또한 결혼 과정에 한국인 남성을 직접 대면하기는 했었으나, 언어가 소통되지 않은 관계로 한국인 남성의 지적장애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

1

(10 2.) (3)

2010.5

3.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제안 가. 대체적, 단순노동에 대한 국내수요 파악 및 적극적 비자발급 H-2

H-2

20		3-4
	,	
,		·
<u> </u>		

20,30

나. 입국 이전단계에 국제결혼 실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2010.2

다.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극적, 맞춤식 교육

2011.37. 9 3

3

5. 결론

20 20

3-4 ?,

1960

주제 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한 국 염

수렁과도 같은 국제결혼중개업문제, 해결책은 없는가?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90%

- 1. 잘못된 국제결혼중개업 알선의 심각성 문제
 - 1)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동영상 "나는 죽었어요."

. " " (I YOU)

```
14
          )
                                18
19
          ).
```

1).

1

2) 이혼율 통계에서 살펴볼 점

0 2010 11,245

9.6%

70.3% 29.7%

23

14 , 5 22.1%

5 (0.4)32 79.4%

5 632%

. ? 6.0

90%

¹⁾ 이 글은 지난 6월 2일 거행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추모제에서 상영된 동영상의 내용으로, 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대구지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제작한 것이다.

- 2.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현황, 피해실태 및 보완필요성에 관하여
 - 개인브로커들의 규제 필요성

(2005 (2008)), 40% ,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알선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은 인 신매매피해자로 보호해야

40.3%

○ 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의 모순성

○ 지자체의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의 문제

○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중개업 창구 추진의 문제

2010 7

' (2008.7.24)

○ 결혼지원센터와 한국정부의 협력체결문제

, 2007

2007 - 15

 ∞

○ 현지 브로커들에 대한 관리문제

3.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맞춤식교육 제안에 대하여

2007

2

4. 노동이주의 유연화문제

. 2007

2006 2) .3) 2005 136% 8 2006 2% 10 2%

²⁾ 국제결혼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은데, 모든 국 제결혼이 다 인신매매라는 것도, 또 인신매매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알선에 의한 결혼과정이 다분히 인신매매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³⁾ 한국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현행과 과제(한국을 중심으로)」,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전략회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6. 17쪽.

23

?

?, ?

발 표 문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김 종 철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 비교법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

김종철1)

l. 서론

2.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 가. 영주 비자나 귀화 허가를 받아 체류

¹⁾ 서울공익법센터 APIL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F-2 2) 2 3)

> 2 5

2

5

6 2 3, 4). (

6 2 3 "" ,, ,, ,, ,,

2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產)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³⁾ 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6 2 3 6 2 3 840 6 2 3

4)

6 2 4

().

^{4)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나타난) 판결문, 형사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받은 공소권 없음 이나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문, 배우자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을 설명하는 확 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등

F-2

나. 영주비자,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체류

, (12 ,

,

).

.

F-2
F-2
(12 [1]).

,

•

2 1 1 , 2

1 3 ,

, 1).	, 2)	2		2
	F-2 1	, 2	(2
		, F-1		2
2))	F-2	<u>G-1(</u>)	
		_)		
F-2	G-1 F-2 F-1	1) .		G-1

3.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가. 독일

4 1 1 3 나. 프랑스). 다. 스위스

라. 일본

1 3

마. 호주

2

, 2

(

)

바. 캐나다

3

6).

사. 미국

2 90

⁶⁾ 캐나다인 배우자는 별거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 롯, 스폰서로서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캐나다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상태를 유지 하는데 스폰서 계약을 악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⁷⁾ 경찰, 법원, 병원, 학교, 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발급한 기록의 사본이나 진술,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보호명령, 보호시설의 원조를 받은 증거 등

⁸⁾ 결혼 이주 여성이 출국이 다른 외국인이 출국이 초래하는 것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로서 이러한 요인은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4. 결론

10

36

(3) 3

36 10

2010.5.4 2011.1.1.

).

토론문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차 규 근 前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국적, 영주권취득 관련검토

1. 관련 통계

❖ 혼인귀화자 현황

(단위 : 명)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	2,644	3,085	5,812	11,744	6,154
베트남	222	439	1,115	3,754	2,981
필리핀	302	313	550	809	436
몽골	22	65	110	159	135
캄보디아	8	16	35	104	278
우즈베키스탄	36	50	57	96	38
기타	110	222	237	475	249
합계	3,344	4,190	7,916	17,141	10,271

❖ 혼인단절 귀화자 현황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중국	200	554	364
베트남	4	6	29
필리핀	6	10	8
몽골	1	2	3
캄보디아	0	0	0
우즈베키스탄	1	1	2
기타	2	9	3
합계	214	582	409

❖ 영주자격(F-5) 현황

연도	총계	국민의 배우자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자	화교	재외동포	기타
2002	6,022					
2003	10,062					
2004	10,571					
2006	13,957					
2008	19,276	2,237				
2009	22,446	9,107		11,227		
2010	45,473	12,692	19,309	11,560	187	1,725
11.5월말	53,545	13,650	25,332	11,739	232	2,592

❖ 국민의 배우자(F-2) 현황

(2011.5.31.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년 5월	'11년 5월
인 원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35,800	143,882
전년대비	25.0%	17.7%	11.0%	2.1%	13.2%	-	6.0%



❖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1,978	6,411	38,634	3,750	4,480	7,287	5,868	6,730
143,882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957	9,084	1,537	2,563	4,192	8,174	2,917	3,320

❖ 국적별, 성별 현황

국적 구분	계	중국1)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43,882	66,916	31,287	35,985	10,727	7,803	4,343	2,584	2,434	13,090
남자	19,214	11,492	7,737	171	919	218	6	43	55	6,310
여자	124,668	55,424	23,550	35,814	9,808	7,585	4,337	2,541	2,379	6,780

[※] 여성 86.6%, 남성 13.4%.

[※] 중국 46.5%, 베트남 25.1%, 일본 7.4%, 필리핀 5.4% 순임.

¹⁾ 한국계 포함

2. 검토

1)

2)

4)

F-2 1 , 2

2 ,(46 2 , 44 2)

0

주제 3. 다문화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김 민 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김민아 사무관

1. 다문화가족 현황

* 2000				2010.1
182	1)	, '09	8.7%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2)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126,955	144,385	167,090	181,671

<성별·국적별 현황('10.1월현재)>

(단위 : 명)

	결혼 이민자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자녀현황		
계	남	O‡	계	남	0‡	계	남	0‡	계	남	0‡
181,671	19,672	161,999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121,935	61,734	60,201

* 자료 : 행안부

^{1) 2011. 4.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1.10.5. 시행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결혼이민자 또는 인 지 · 귀화로 인한 한국 국적자가 출생 · 인지 · 귀화로 인한 한국인인 자와 가족을 이루게 된 경우가 모두 해당 되게 되었음. 따라서 기타사유 귀화자(10년 기준 39,877명) 포함 여부 등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함.

²⁾ 최근(11년 1월 기준)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수 211,458명, 기타사유귀화자 수는 41,306명이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수는 151,154명으로 집계됨.

(27.4%), (22.6%), (62%), (60%), (49%),0 $(48\%), \qquad (44\%), \qquad (43\%) \qquad .$

<출신국별·지역별 현황('10.1월현재)>

(단위: 명)

	출신국별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출신국 전체	181,671	19,672	161,999
중국(한국계)	59,346	8,785	50,561
중	51,348	4,250	47,098
베트남	34,640	179	34,461
필리핀	10,610	240	10,370
일 본	5,326	557	4,769
동남아(기타)	4,204	139	4,065
구 명	2,602	44	2,558
태 국	2,272	59	2,213
남부아시아	2,355	1,707	648
중앙아시아	2,145	79	2,066
미국	1,678	1,153	525
기 타	5,145	2,480	2,665

	지역팀	별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 국	181,671	19,672	161,999
서 울	41,123	7,608	33,515
부 산	7,875	567	7,308
대 구	5,321	437	4,884
인 천	11,344	1,206	10,138
광 주	3,538	186	3,352
대 전	3,900	313	3,587
울 산	3,416	210	3,206
경 기	49,855	6,419	43,436
강 원	4,504	175	4,329
충 북	5,664	300	5,364
충 남	8,781	404	8,377
전 북	7,051	219	6,832
전 남	7,945	668	7,277
경 북	8,906	318	8,588
경 남	10,834	547	10,287
제 주	1,614	95	1,519

* 자료 : 행안부

10.5%), 2005 42 ***** 2010 34 , 2004 10%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증 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증 감 률	18.1	25.1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	한국남성+외국여성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증 감 률	29.3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	한국여성+외국남성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증 감 률	4.6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1.5	-2.4

* 자료 : 통계청

\$ 2010 3) 11,245

9.6%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이혼건수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외국인과의 이혼	1,498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11,692	11,245
	(총 이혼 중 비중)	(1.3)	(1.3)	(1.2)	(1.2)	(2.4)	(3.3)	(4.9)	(7.0)	(9.7)	(9.4)	(9.6)
	증 감	96	196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437	-447
	증 감 률	6.8	13.1	3.0	15.4	64.0	26.4	47.1	41.3	29.8	3.9	-3.8
•	한국남성+외국여성	247	387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증 감 률	24.7	56.7	-1.8	43.9	186.5	52	65.1	45.1	39.5	4.2	-4.8
•	한국여성+외국남성	1,251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3,392	3,341
	증 감 률	3.9	4.5	4.4	7.4	18.3	3.2	23.1	34.5	11.1	3.0	-1.5

* 자료 : 통계청

, 1 2010 () , 113 , 4) (56),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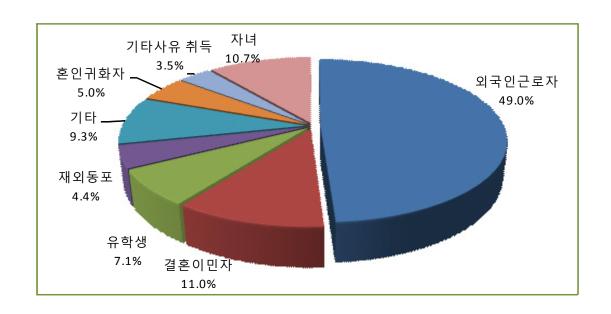
³⁾ 귀화자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이혼건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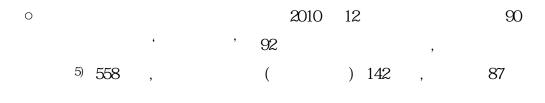
^{4) &#}x27;외국인 주민'의 규모에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는 점과, 귀화자까지 외국인(계?)에 포함하는 것 이 사회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외국인(계) 주민 현황('10.1월현재)>

(단위: 명)

외국인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귀화자 및
주민수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기타 사유	결혼이민자자녀
1,139,283	920,887	558,538	125,087	80,646	50,251	106,365	96,461	56,584	39,877	12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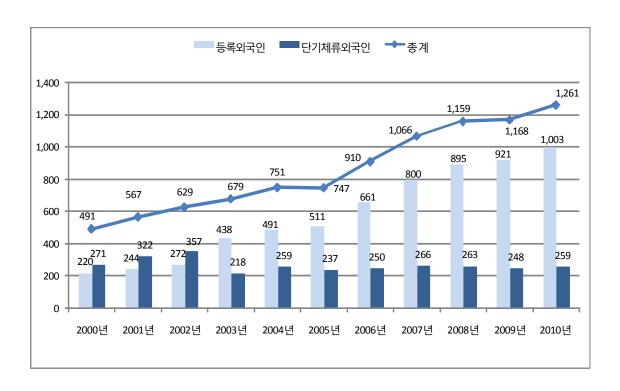
<체류외국인 추이('10.1월현재)>

(단위: 명)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491,324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등록외국인	210,249	485,144	631,219	765,746	854,007	870,636	918,917
단기체류외국인	271,362	236,958	249,542	266,011	263,402	247,590	258,673
거소신고	9,713	25,365	29,388	34,516	41,457	50,251	83,825

^{*} 거소신고 : 체류자격 재외동포(F-4)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거소신고자

⁵⁾ 불법체류자(169천명), 산업연수생(5천명)은 포함되지 않는 수치임.



122 ***** 2010. 1 , 6 76 (62.1%), 7~ 12 31 (25.1%), 13~ 18 16 (128%)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10.1월 현재)〉

구 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21,935명	75,776명	30,587명	8,688명	6,884명
비 율	100%	62.1%	25.1%	7.1%	5.6%

* 자료 : 행안부

(o ()) 61 (50.2%), 28 12 (9.8%) (22.6%), 30 (246%), 19 (15.6%), 9 (7.6%)

<부 또는 모 출신국별 자녀 현황('10.1월현재)>

(단위 : 명)

					(171 · 0)
=	구 분	합 계	외국인 부모1)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JOH	할 계	121,935	6,971	98,531	16,433
	소 계	69,874	5,977	54,313	9,584
	중 국	29,800	1,871	23,009	4,920
 동북아	중국(조선족)	31,404	3,834	23,360	4,210
<u> </u>	대 만	1,129	91	983	55
	일 본	5,734	134	5,485	115
	몽 골	1,807	47	1,476	284
	소 계	44,520	612	38,390	5,518
	베트남	27,517	313	23,637	3,567
 동남아	필리핀	11,926	214	10,534	1,178
<u>0</u> =01	태 국	1,711	45	1,373	293
	인도네시아	505	7	450	48
	기 타	2,861	33	2,396	432
남!	부아시아	1,619	125	1011	483
중인	앙아시아	2,359	57	1953	349
	기 국	821	23	680	118
	러시아	766	36	540	190
-	기 타	1,976	141	1644	191

^{*} 자료 :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10.1

<거주지역별 자녀 현황('10.1월현재)>

(단위 : 명)

구분	합 계	만6세이하	만7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합계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서울	19,014	11,044	5,230	1,477	1,263
부산	5,698	3,511	1,422	427	338
대구	3,904	2,484	974	265	181
인천	7,805	4,378	2,141	693	593
광주	2,752	1,806	653	154	139
대전	2,881	1,800	653	244	184
울산	2,798	1,793	620	218	167
경기	29,953	17,616	8,009	2,350	1,978
강원	3,900	2,510	939	289	162
충북	4,710	3,045	1,158	311	196
충남	6,953	4,648	1,602	430	273
전북	5,849	3,898	1,366	330	255
전남	7,453	4,951	1,805	393	304
경북	7,715	5,244	1,685	461	325
경남	9,260	6,187	2,047	570	456
제주	1,290	861	283	76	70

^{*} 자료 : 행안부

¹⁾ 외국인 부모는 출생 기준으로 현재는 귀화자 자녀 수

2010 * 6) 36,396 34,338 , 2,058 . 0 12.5%, 68.7%, 14.0%, 4.7% (21.1%),(129%), (9.7%), (7.3%), (6.8%)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17.3%), (16.9%)

(340%),

(단위 : 명)

구분	유		중	ュ	계
2009년	-	20,632	2,987	1,126	24,745
2010년	4,298	23,602	4,814	1,624	34,338

* 자료 : 교과부

15.1%, 53.4%, 21.7%, (37.7%), (25.6%), (82%),9.9%, (7.3%)(187%), (181%), (133%)

<외국인근로자 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유		중	고	계
2009년	-	834	307	129	1,270
2010년	310	1,099	446	203	2,058

* 자료 : 교과부(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곤란)

⁶⁾ 교과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범주에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지역별·학교급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제결	혼가정 흑	학생 수		외국인가정 학생 수				
十正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34	3,108	584	196	4,422	83	384	233	76	776
부산	248	978	197	70	1,493	13	44	11	37	105
대구	131	606	115	30	882	11	29	5	2	47
인천	266	1,171	209	82	1,728	35	97	21	15	168
광주	79	567	104	34	784	9	13	•	•	22
대전	168	409	98	36	711	73	56	10	11	150
울산	134	349	62	19	564	3	3	5		11
경기	541	5,029	1,144	515	7,229	38	328	115	46	527
강원	222	1,341	289	77	1,929	8	15	4	2	29
충북	227	1,089	241	62	1,619	2	17	7	4	30
충남	244	1,565	399	129	2,337	8	32	16	3	59
전북	226	1,674	250	75	2,225	•	27	8	1	36
전남	421	2,337	449	106	3,313	•	5	1	•	6
경북	488	1,475	262	75	2,300	5	23	5	2	35
경남	350	1,677	377	103	2,507	4	16	5	3	28
제주	19	227	34	15	295		10	•	1	11
계	4,298	23,602	4,814	1,624	34,338	292	1,099	446	203	2,040

'20 * (5,727)' (6,971)

<특별귀화 신청현황>

(단위 : 명)

국적별 현황										
계	중국 (한국계)	중국	공 명	대만	베트남	일본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기타
5,727	3,397	1,834	133	84	63	46	36	31	24	79

^{*} 자료 : 법무부, 『20세 이하(90년 1월 이후 출생) 특별귀화 신청자 수』, '10.9월 가준

〈출생시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18세 이하 자녀 현황〉

	지역	별 현황	
시도명	계	남	O‡
서울특별시	2,812	1,443	1,369
부산광역시	96	43	53
대구광역시	59	21	38
인천광역시	576	306	270
광주광역시	43	20	23
대전광역시	45	19	26
울산광역시	43	22	21
경기도	2,796	1,441	1,355
강원도	80	45	35
충청북도	63	29	34
충청남도	135	62	73
전라북도	37	18	19
전라남도	59	23	36
경상북도	18	7	11
경상남도	99	40	59
제주도	10	6	4
총계	6,971	3,545	3,426

* 자료 : 행안부

***** , 2009 , 6~ 11 7)

87.2%, 12~ 14 99.4%, 15~ 17 99.5%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계(수)		
T世	미케읙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		고등학교	/1(十)	
전체	72.0	27.9	23.2	3.7	1.0	100.0(97,461)
6세 미만	99.7	0.3	0.3	-	-	100.0(67,257)
6~11세	12.8	87.2	86.7	0.5	-	100.0(24,148)
12~14세	0.6	99.4	33.7	65.9	0.8	100.0(4,639)
15~17세	0.5	99.5	-	31.5	68.0	100.0(1,417)

* 출처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0

⁷⁾ 만6세는 미취학연령임을 감안하여야 함. 7, 8세의 취학률은 각각 95.7%, 98.6%임.

(232%), (19.8%)(27.4%), (29.8%) , (27.0%)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초등학생 자녀 교육 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알림장 챙기기	숙제 지도 하기	학습지도 (예습 및 복습)	학원비 마련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기타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16.5	2.9	19.8	23.2	27.4	5.0	5.3	100.0(13,605)		
동 지역	17.3	3.2	18.0	21.3	29.8	4.8	5.5	100.0(9,210)		
읍•면 지역	14.8	2.2	23.7	27.0	22.3	5.5	4.6	100.0(4,395)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15.4	3.0	20.6	23.7	27.3	4.9	5.0	100.0(12,627)		
동 지역	15.8	3.4	18.9	22.0	30.0	4.7	5.2	100.0(8,310)		
읍•면 지역	14.6	2.3	23.9	27.0	22.1	5.4	4.7	100.0(4,317)		
			남	성 결혼이민	자					
전체	30.2	1.2	10.0	16.1	28.3	6.0	8.2	100.0(978)		
통 지역	30.6	1.3	10.0	15.4	28.2	5.8	8.7	100.0(900)		
읍•면 지역	25.6	0.0	10.3	23.1	29.5	9.0	2.6	100.0(78)		

^{*} 출처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0 90.5% (27.8%), (80%), (25.5%), (9.3%), (82%),(5.6%)(: 88.8%, 939%).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지원 필요 없음	한국어, 한글 교육	기초 교과 지도	나의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진학 지도	학교 교육비 · 급식비지원	기타	계(수)
				전체 결	혼이민자				
전체	9.5	9.3	27.8	8.2	5.6	8.0	25.5	6.1	100.0(13,411)
동 지역	11.2	8.5	26.0	8.3	5.6	8.2	25.8	6.5	100.0(9,086)
읍•면 지역	6.1	11.2	31.5	7.9	5.8	7.4	25.0	5.1	100.0(4,325)
				여성 결	혼이민자				
전체	8.7	9.4	28.6	7.6	5.9	8.3	25.5	6.0	100.0(12,440)
동 지역	9.9	8.7	26.9	7.6	5.9	8.7	25.8	6.5	100.0(8,191)
읍•면 지역	6.2	10.8	31.9	7.6	5.8	7.5	25.1	5.1	100.0(4,249)
	•			남성 결	혼이민자	•			
전체	20.8	8.0	16.8	15.0	2.8	4.3	25.5	6.7	100.0(971)
동 지역	22.6	6.3	17.1	14.5	2.7	4.5	25.8	6.6	100.0(895)
읍·면 지역	0.0	28.9	13.2	21.1	3.9	2.6	22.4	7.9	100.0(76)

* 출처 :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 2009

2050

5%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전망 : 총인구의 0.6% ('10년) → 5% ('50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자녀) 및 총인구 대비 비중 전망>



2.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개요

7	L	ᅕ	コフォ	π	L
7	Γ	辛 ?	いる	ш	Г

∠ 1.	구근 0 씨			
•	'06			
0	г) ر	('064, 12)
	* '06년에 서비스전담기관으로 '결혼	이민자가 족 지	원센터'21개소 설치	
0	г	('086')	r	('08.9)]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지원 강화대책('08.11 복지부) 등			
•			г	
	ر :)	('09.12)	,	г
	(10 '12)」	(10.5)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	0~'12)2011년	년도 시행계획 』 수립(('11.3)
•	, (10534 , '	10.4.4. , 10.5	5.)
	*	,		
	()			

* '다문화가족': '날때부터 한국인 + 결혼이민자등' → '한국인 + 결혼이민자등'

나. 근거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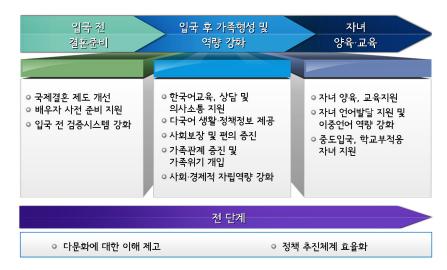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

- ◆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 비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
 - ①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③결혼이 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지원강화, ④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⑤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 정책의 핵심내용

0 , 8 ('11 94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현황>



〈부처별 주요정책〉

부 처	주 요 정 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ㆍ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법무부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민자의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교과부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행안부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및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지원
문화부	•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 다문화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지원
노동부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식품부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라. 2011년 정책방향

- 국제결혼 건전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 점 추진
- 서비스 접근성 및 질(質) 제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결 혼 준 H 다 계

- ▷ 결혼중개 및 입국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제도개선
-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상대국과 협력 강화

가족형성 및 역량 강화단계

- ▷ 방문교육 서비스, 다국어 상담 등 생활적응 지원 강화
-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자녀양육 교육단계

- ▷ 언어발달 지원 등 자녀 학습·양육 지원 확대
- ▷ 중도입국 자녀 실태파악 및 초기적응 지원 강화

전 단 계

- ▷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지역단위 계획 수립·조정
- ▷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 확대 및 내실화
-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사회적 이해 제고
- ▷ 민·관 협력 활성화 등 나눔 문화 확산

3.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현황

가	. 자녀 언어발달 및 학습·교육 지원(여성가족부·교과투	부복지부 · 등	문화부)
•	()	(
)		
0			
	200 (← '10 100) *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언어지도 센터에 배치, 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사를 다문화기	수지원
0	겠다에 배치, 전한 및 교육 시비그 제공 3,200 ,		
•			
0	(5 , 1,000)), 5	
0	()		
0	(' ') *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저소득가구(100% 이하) 2~6세 통한 서비스 제공(구몬, 대교 등 9개 기관)	아동 대상 ㅂ	- 우처를
•		('10 60	\rightarrow
	'11 80), , ,		
0)	*(8,000
	* 학습, 숙제지도, 문화체험 및 상담 등 지원(참여 대학생에게 학점 부여)	근로장학금 !	및 봉사
0			

12 $(2 \sim)$ () 100 , 3 ~) * 해당언어 : 결혼 이민자 주요 출신국 7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나. 학교 부적용 자녀 지원(여성가족부교과부)

*(, '10 5 \rightarrow '11 8)

* '10년 부산, 익산, 나주, 홍성, 안산 + '11년 서울, 경기, 경남권

'Rainbow School'* $(10 \quad 50 \quad , \quad \rightarrow '11 \quad 600 \quad , \quad 3\sim 12 \quad)$

```
(
0
 1 , 12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주 5일. 4개월 과정 운영
                        *(2~7)
0
  * 서울. 경기지역 대상. 기초생활. 사회 ·정서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현황 등 조사
   (2~7월)
 ('10 3 )
 ('10 5 )
0
                                          ),
             ('11 2 )
0
                        ( '123 , '133
다. 교사 전문성 제고 및 학교 등의 다문화이해 중진(교과부·여성가족부)
0
            , ,
       (3000)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구과목 개설(교장, 교감 등 관리직 대상), 서울대 중앙다문
   화교육센터에 전문교원연수과정 개설(장학사, 교장, 교감 등 대상), 교대 및 교육
   청 연수원에 직무연수 과정(30~60시간) 개설 등
                     ('10 21 \rightarrow '11 30)
0
       800~ 1,000 )
    (
0
        * ('10.11 )
```

* 다문화교육 포털(www.damunhwa-edu.or.kr)을 통한 학부모 상담·안내자료 제공

(100), ()Ο

*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해외정책사례 발간, '이주청소년 목소리 2' 발간

8 0 2000)

4. 향후 과제

0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8)

0

0

),)

8)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 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0	,	,		
0	, ,	,		
	,			
O		,) ,	
0				
	,			
0	,			
		2		
0	()		

```
2 9
0
                  4
                                                                        14 10)
                    ?)
             (
0
          14
                                          ).
                 5
                             12
                 )
0
              (
                  )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quot;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¹⁰⁾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주제 3. 다문화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정 기 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토론문

정기선(IOM 이민정책연구원)

2006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5

5

1) DB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구별짓기' (대상화)에서 벗어나기

❖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14 ()

¹⁾ 여기에는 다문화언어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교육전담교사,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 교 육청의 담당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 등이 포함됨.

)

2)

²⁾ 재한외국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 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 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조.

발 표 문

주제 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이 현 곤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현곤

I. 들어가며

2009. 2 2011. 2 2 5 2009. 2. 20. 2009. 6. 10. 178 108 60% 1). 2009. 2 20. 2010. 2. 22.) .2) 58% 2008. 1. 1. 2008 12 31. 2,520 1,978 173 45, 126, 58, 43 33 , 12 , 3 , 2)3).

¹⁾ 위 기간동안 처리된 전체 사건은 447건으로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건은 조정, 화해, 취하, 취하간주 등으로 종결되었다. 참고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종결된 사건들 중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은 그다 지 크지 않다.

²⁾ 안종화, 다문화가정 이혼사건의 특성,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향, 2011. 6. 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토론자

³⁾ 현재는 판결문 작성 간이화로 인하여 '국제사법'으로 정확한 통계를 검색할 수 없다.

13

2

Ⅱ. 다문화가정의 소송유형

1. 통계분석4)

5)

5

: 2009 2 20 ~ 2009 6 10

500. 447

178

(1)

5 178 108 60% 11 , 96, 1

9

(2)

21 , 108 87

⁴⁾ 아래 내용은 필자가 2009. 6. 19. 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정 상담실무자교육에서 발표한 '다문화 가정의 소송사례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 사건을 중심으로)'에서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⁵⁾ 위 통계는 2009. 2.부터 6.까지 약 4개월간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인데, 필자가 가사재판을 담당한 2011. 2.까지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앞서 소개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의 통계분석 또한 대동소이한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최근까지의 사건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
                                   19
    20,
                73
        3
(3)
                           13 ,
                                               2 ,
               82,
                                    3,
                                                               2,
                                                    6).
                                         1
(4)
                                    )
                       7)
   1)
                                           : 25
   2)
                                                     ): 17
   3)
                                                 ): 26
                                          ): 10 8
   4)
                                 (1), (1),
   5)
                    (2),
                 (2)
   1)
                   : 10
   2)
           : 5
   3)
   4)
          : 2
(5)
              : 41
              : 39
              : 19
              : 10
```

⁶⁾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의 판결분석에 의하더라도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이혼 등 사건이 전체 다문화 사건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⁷⁾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판결분석에 의하면 외국인이 원고인 사건은 약 19.5%(그중 이주남성이 원고인 사건은 약 17.1%, 이주여성이 원고인 사건은 약 82.4%), 외국인이 피고인 사건(그중 이주남성이 피고인 사건은 약 17.6%, 이주여성이 피고인 사건은 약 82.4%)은 약 80.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⁸⁾ 그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출국된 경우이다.

(6)

: 103

: 3

: 1

: 1

1

2. 검토

Ⅲ. 구체적 사례

1. 이혼

10

- 2001. 1. 2007. 5.

2008 3

2008 3 8 2008 3 21.

, 2008 10.

2006 12

1

3

2008 5.

2008 7.

2008 8

2008. 9.

(2)

, 2008 3

, 2008 9.

, 2008 6

2009. 8 13 2010. 4. 20.

2009. 10. 3 461

1

451

2008 8

. 2008 11.

2008 12

3 4

2008 11.

, 1

(2010 574)

15

,

·

10 . 2008 7.

. 2008 8

, 100m

,

, 840 6 .

2. 기타 사건

.

, .

2008 7.

2009. 4

2009. 7.

2007. 1. 0000 2007. 7.

OO

2008 6

2007. 12

2005. 7.

Ⅳ. 서울가정법원의 다문화가정 관련 대책

1. 통역자원봉사자

2009. 6. 102 14)

2. 외국인을 위한 재판상 이혼 및 소송구조 안내

(10

3.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실시

2010. 9. 1.

V.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토론문

주제 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윤 종 섭

토 론 문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종섭

¹⁾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 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0 o : 0 : 3 9)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명단

김재련 법무법인 다온 (위원장)

김종철 서울공익법센터 APIL

왕미양 법무법인 탑

이영임 김앤이 법률사무소

이정원 법무법인 연우 (간사)

이종수 법무법인 대세

이태원 공동법률사무소 이창

임동번 법무법인 원전

임준호 법무법인 세종 (위원장)

정혜선 법무법인 다온

조동식 변호사조동식법률사무소

태지영 법무법인 민

(이상 12인, 가나다 순)